

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3조와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을 “제43조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, “소기업 및 소상공인”을 “소상공인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2.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
3.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차차액 일부 보전
4. 그 밖에 저소득층의 창업을 위한 지원 등

제5조제4항 중 “금융기관”을 “은행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 중 “5년으로”를 “2020년 12월 31일로”로 한다.

제6조 중 조의 제목 “(기금운용위원회)”를 “(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

의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의 “중소기업기금심의위원회”를 “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.

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은 지역경제과장, 재무과장, 사회복지과장, 일자리정책과장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되,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위원회에 위원회의”를 “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6조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3분의 2 이상의”를 “과반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

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⑦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기금의 용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
2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3.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

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금융기관”을 “은행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따라서”를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및 제4조에 따라서”를 “및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,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와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제43조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 ----- 소상공인----- ----- -----
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용자하거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.	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 1.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용자하거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②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	2.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
③ 그 밖에 저소득층의 창업을 위한 지원 등	3.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
④ 「은행법」 제3조제1항에 따	

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
제4조에 따라서 용도에 반하여
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
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
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
수 있다.

및

-----.